

● 제289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5.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한기영 의원 외 11명 공동 발의
- 나. 제안일 : 2019. 8. 1.
- 다. 회부일 : 2019. 8. 13.
- 라. 의안번호 : 800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지방공사 및 공단의 근거법은 「지방공기업법」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근거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4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단의 근거법은 「지방공기업법」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근거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관련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된 것임.

### 2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으로 변경(안 제49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대해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조직·예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3월 24일 「지방공기업법」에서 관련 사항을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지방공기업법].
- 본 개정안은 이와 같은 상위 법률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포함된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내용을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는바, 이는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조례”).]

**3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지방공기업법」”으로 변경(안 제49조제3항 등)**

- 현행 「조례」에서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의 근거법으로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인용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내용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으로 분리·제정되어 「조례」의 관련 내용 변경을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근거법으로 인용한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 또한 「지방공기업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는 바 이 역시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법」 제146조가 근거법으로 규정된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49조제3항 뿐 아니라 제56조와 제56조의2에도 기술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일관성을 위해 이들 두 조항에 대해서도 동일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1> 현행 조례와 개정 제안 조례의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 제안
제56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① (생략)	제56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산하기관장"이라 함은 <u>법 제146조</u> 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으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② ----- 「지방공기업법」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p>제56조의2(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등의 보고) ① 의장은 산하기관장에게 시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법 제 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원으로 취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56조의2----- ----- ----- 「지방공 기업법」 ----- ----- -----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	--

**4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포함된 관련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측면에서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 146조”를 “「지방공기업법」”으로 변경한 제안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56조와 제56조의2에도 적용하여 동일하게 변경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